

##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

수신자 고발인 참여연대 대표(박상중 이선종) 발신자 특별검사 조준웅  
제 목 고발인 통지



귀 단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신 2000형 제117716호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안내

## 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고(만약 항고 기각시 고소인 및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하실 수 있음)
- 나. 다만, 고소인 및 가항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함.)
-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 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를 제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

-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으며,
-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파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시 죄명이며, 처분죄명은 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처분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4. “구공판처분(求公判處分)”의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 소	구 공 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할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기 소 중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 소 유예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침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 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협의없음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아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가안됨	피의자의 행위가 일용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불기소	기소중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 소 중지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각 하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하는 경우, 협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증·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	
타판이송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진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소년보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진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사건송치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사건의 경우 항후 처분결과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소가 변경된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주소변경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이유

### I.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종환, 같은 한용외, 같은 조관래, 같은 조두현은 각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이하 ‘삼성SDS’로 표기함)의 이사로 일하던 자인바, 삼성SDS 대표이사 김홍기, 감사 이학수(각 동일자 구공판)와 공모하여,

삼성SDS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이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이하 이재용 등이라 함)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대규모 상장차익이 기대되는 위 회사의 주식을 공정한 시세에 훨씬 미달하는 가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아가 위 회사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하여, 1999. 2. 25. 개최된 동 회사의 이사회에서 시설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권면총액 230억 원의 무기명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경우 삼성SDS의 이사 또는 감사인 피의자들로서는 삼성SDS

위 등본임.

2008. 4. 18

기획주사보 이영호

의 주식이 거래된 실례 및 거래가격 등을 검토하고, 거래실례가 없다면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회사의 자산가치, 내재가치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삼성SDS 주식의 실제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행사가격을 산정함으로써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이사회에서 삼성SDS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당시 장외거래에서 주당 55,0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었고 그 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었으므로 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SDS의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삼성SDS의 주가를 산정한 주당 14,536원이 최소한의 적정가격이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삼성SDS의 주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7,150원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으로 정하였다.

삼성SDS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1999. 2. 26.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230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당일 이재용 등이 이를 모두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삼성SDS의 주식

3,216,7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삼성SDS 주식의 실제가치  
인 주당 55,000원 또는 14,536원과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인  
주당 7,15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II. 수사한 결과

### 1. 피의자 김종환, 한용외, 조관래

○ 피의자들은 1999. 2. 25. 삼성SDS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찬성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본 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의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참작사유가 있다.

-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를 정점으로 한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 주체가 되어 회장의 자녀들인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SDS의 경영지배권을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여 대표이사 김홍기와 경영지원실장 박주원을 통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것이어서 피의자들로서는 사실상 그 사채발행을 막기 어려웠던 점
- 당시 삼성SDS는 책임경영의 원칙아래 회사의 자금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위 박주원이 전담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들은 삼성SDS에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지 여부와 주식의 가치평

가 등에 관한 위 박주원의 설명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 위 박주원은 1999. 2. 25.자 이사회에서 피의자들에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등에 관한 합당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단지 발행하게 될 사채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만으로 대체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의자들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다만 형식적인 이사회의 결의절차를 갖추는 데 협력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 피의자 김종환은 삼성SDS의 이사로 일하는 동안 주로 정보통신사업부(1992부터 2000. 퇴직할 때까지 정보통신본부장)에서 근무한 관계로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이나 주식의 이동 등에 관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경영지원실장 박주원의 말을 믿고 있었던 점
- 피의자 한용외는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 삼성문화재단의 상근 대표이사였고, 삼성SDS에서는 비상근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회사의 재무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
- 피의자 조관래는 당시 컨설팅센타의 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의자들은 모두 그 범의가 미약하며,

- 나아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으로 피의자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의자 한용외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삼성그룹을 떠나 현재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9년이 지난 사건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각 기소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 2. 피의자 조두현

- 피의자는 1997. 3. 18.부터 2000. 3. 18.까지 삼성SDS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사회의사록에 피의자가 1999. 2. 25.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사채의 발행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채발행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1999. 2. 25.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삼성SDS의 솔루션사업부 이사(상무)로서 삼성SDS의 기술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2-3명의 직원들과 함께 미국 동부지역에 있는 대학 도시들을 순방하면서 컴퓨터공학 계통의 박사급 인력스카우트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가 있은 다음 날인 2. 26. 귀국하여 2. 27.에 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위 피의자는 1999. 2. 20.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2. 26. 입국한 사실이 인정

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 26. 발행되어 당일 인수절차를 모두 마친 점, 대표이사 김홍기, 경영지원실장 박주원, 감사 이학수(각 동일자 기소), 등은 모두 위 피의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사회 의사록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피의자 조두현은 1999. 2. 25. 자 삼성SDS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이사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 미국에 있을 동안에 경영 지원실장 박주원이가 전화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위 박주원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박주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유는 이사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박주원의 위 진술은 삼성SDS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직접 참석하는 대신 별도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채의 내용을 알고 그 발행에 찬성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의자는 혐의 없다.